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
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 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가보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의료기관”을 추가하는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1360호, 2026. 2. 19. 공포, 2026. 8. 20. 시행)됨에 따라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8조)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기정예산에 반영되었음

다. 합 의 :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1항) 중 “보훈병원”을 “보훈병원 및 제1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의료기관(이하 “공공단체의료기관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하는”을 “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하는”으로, “제1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”을 “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”으로 한다.

- ① 법 제7조제2항의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”란 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.

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) <신 설>	제8조(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) ① 법 제7조제2항의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”란 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.
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진료할 때 고도의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거나 진료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<u>보훈병원</u> 에서 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를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보훈병원</u> 및 제1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의료기관(이하 “공공단체의료기관”이라 한다)----- ----- ----- -----.
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 보	③ -----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하는 -----

<u>훈병원장이나 제1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진료 일시와 진료 장소를 정한 후 진료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.</u> <u>③</u> · <u>④</u> (생략)	<u>-----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-----</u> <u>-----</u> <u>-----</u> <u>-----.</u> <u>④</u> · <u>⑤</u>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)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	
연 락 처	(044) 202 - 5693